

주의: 제공되는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간행된 원본만이 정확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역	유럽(Europe)																																																																																	
법규명	Directive 67/458/EEC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ing of dangerous substance(개정 Directive 92/32/EEC 반영)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지침																																																																																	
문서종류	Directive																																																																																	
대상물질	<p>대상제품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p> <p>예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 또는 수의학적 용도를 위한 의약품 2. 화장품 3. 폐기물 형태의 물질 4. 식품 5. 동물 영양제 6. 살충제 7. 방사성 물질 8. 이미 신고되었거나 승인 절차상의 물질 및 조제품 9. 철도, 도로, 내륙수로,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운송된 유해물질 및 조제품 10. 세관관리 하, 어떤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저장상태에 있는 물질 또는 조제품 																																																																																	
물질 분류 및 표시	<p>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은 다음과 같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Index No</th> <th>Chemical name</th> <th>Notes related to substances</th> <th>EC No</th> <th>CAS No</th> <th>Classification</th> <th>Labelling</th> <th>Concentration limits</th> <th>Notes related to preparations</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Index No	Chemical name	Notes related to substances	EC No	CAS No	Classification	Labelling	Concentration limits	Notes related to preparations																																																																								
Index No	Chemical name	Notes related to substances	EC No	CAS No	Classification	Labelling	Concentration limits	Notes related to preparations																																																																										

N-CER (Network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센터에서는 N-CER의 서비스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공되는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간행된 원본만이 정확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p>물질 분류 및 표시</p>	<p>2.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어야 함.</p> <p><u>Index No</u> 색인번호. ABC-RST-VW-Y 형태배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 화학원소의 원자번호(수열 형성을 위하여 0기재), 또는 유기물질의 일반적인 분류 번호 - RST: 물질의 연속번호 - VS: 물질의 생산, 또는 판매시 형태 - Y는 ISBN에 따른 check digital <p><u>Chemical name</u> 화학물질명.</p> <p><u>Notes related to substances</u> 물질의 확인, 분류 및 표시에 관련된 설명.</p> <p><u>EC N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NECS 번호(200-001-8부터 시작되는 7개의 숫자) - ELINCS 번호(400-010-9부터 시작되는 7개의 숫자) - 비교분자번호(500-001-0부터 시작되는 7개의 숫자) <p><u>CAS No</u> 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p> <p><u>Classification</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 E - 산화성 : O - 극 가연성: F+ - 고 가연성: F - 맹독성: T+ - 독성: T - 유해성: Xn - 부식성: C - 자극성: Xi - 감작성: R42 또는 R43 - 발암성: Carc. Cat. - 변이원성: Mut. Cat. - 생식독성: Repr. Cat. - 환경위험성: N 또는 R52, R53, R59 등 <p><u>Labell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분류 상 기호: E, O, F, T+ 등 - R 경고문구(Risk Phrase): 보건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써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태아독성 등이 있는 물질 - S 경고문구(Safety Phrase):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써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산화성 등이 있는 물질
--------------------------	--

N-CER (Network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센터에서는 N-CER의 서비스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사전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의: 제공되는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간행된 원본만이 정확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 분류 및 표시	<u>Concentration limits</u> 최대허용농도
	<u>Notes related to preparations</u> 조제품 표시에 대한 설명

예)

Index No	Chemical name	Notes related to substances	EC No	CAS No	Classification	Labelling	Concentration limits	Notes related to preparations
615-005-00-9	4,4'-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1] diphenylmethane-4,4'-diisocyanate [1] 2,2'-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2] diphenylmethane-2,2'-diisocyanate [2] o-(p-isocyanatobenzyl)phenyl isocyanate [3] diphenylmethane-2,4'-diisocyanate [3] 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4]	C	202-966-0 [1] 219-799-4 [2] 227-534-9 [3] 247-714-0 [4]	101-68-8 [1] 2536-05-2 [2] 5873-54-1 [3] 26447-40-5 [4]	Xn: R20 Xi: R36/37/38 R42/43	Xn R: 20-36/37/38-42/43 S: (1/2)-23-36/37-45	C ≥ 25 % Xn: R20-36/37/38-42/43 5 % ≤ C < 25 % Xn: R36/37/38-42/43 1 % ≤ C < 5 % Xn: R42/43 0,1 % ≤ C < 1 % Xn: R42	2

심볼	유해물질 및 조제품의 유해성은 아래의 심볼로 표시하도록 함.			
	E [폭발성]	O [산화성]	F [고 가연성]	F+ [극 가연성]
				
	T [독성]	T+ [맹독성]	C [부식성]	
				
	Xn [유해성]	Xi [자극성]	N [환경위험성]	
				

N-CER (Network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센터에서는 N-CER의 서비스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공되는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간행된 원본만이 정확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p>포장 및 포장라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포장이 되어야 함. 2. 포장 재질은 내용물과 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유해성 또는 위해성 물질로 구성되지 않아야 함. 3. 일반적인 압력이나 변형으로 포장이 풀리거나 흐트러지지 않아야 함. 4. 포장재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읽기쉽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명 -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신원 및 연락 관련 번호(주소, 전화번호) - 심볼 - R 경고문구(부피 125ml 이상인 경우) - S 경고문구(부피 125ml 이상인 경우) - EEC 번호 5. 사이즈는 다음을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피 3ℓ 미만: 최소 52 X 74 mm - 부피 3ℓ 이상 50ℓ 미만: 최소 74 X 105 mm - 부피 50ℓ 이상 500ℓ 미만: 최소 105 X 148 mm - 부피 500ℓ 이상: 최소 148 X 210 mm - 심볼은 전체 라벨 사이즈의 최소 1/10이어야 하며, 1cm² 이상이어야 함.
<p>테스트 및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속서 V에 기술된 테스트 방법에 따라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함. 2.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p>신고</p>	<p>Full Notific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럽화학물질관리목록(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INECS)에 등록된 기존물질 이외 신규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가능한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 - 예측할 수 있는 사용 조건하의 물질의 부정적 영향 - 물질의 분류 및 표시 - SDS(Safety Data Sheet) 2. 이미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해당정보를 관할기관에 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누적량이 50톤 이상인 경우, 관할기관은 부속서 VIII, 레벨 1의 채택된 시험방법(물리화학 조사, 독성조사, 생독성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테스트 및 연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누적량이 500톤 이상인 경우, 관할 기관은 부속서 VIII, 레벨 1의 채택된 시험방법(물리화학 조사, 독성조사, 생독성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테스트 및 연구를 요구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000톤 이상의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누적량이 5000톤 이상인 경우, 관할기관은 부속서 VIII, 레벨 2의 채택된 시험방법(독성조사, 생독성조사)에 따른 테스트 및 사전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N-CER (Network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센터에서는 N-CER의 서비스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공되는 문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간행된 원본만이 정확한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p>신고</p>	<p>Reduced Notifica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톤 이하의 화학물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예측가능한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함.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00kg 이하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부속서 VII, C에 적합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00 kg 의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누적량이 500 kg인 경우, 부속서 VII, B에 적합한 정보를 추가 제출해야 함.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 연간 1톤 의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누적량이 5톤인 경우, Full Notification을 따라야 함. <p>면제조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폴리머 (단, EINECS에서 등재되지 않았거나 2% 이상의 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예외) 2. 제조업자 별 연간 10kg 이하로 시장에 출시된 물질 3. 과학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조건하에 시장출시량이 100kg 이하로 제한된 물질 4. EINECS 인벤토리 내 물질 5. 동물 영양제로 사용하기 위한 첨가제 및 물질 6. 식품 첨가제 및 향료로 사용되는 물질 7. 의료기기 내 유효성분 8. 이미 신고되었거나 승인 절차상의 물질 및 조제품 (단,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정보, 표시, 고객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함.)
<p>발효일자</p>	<p>1967년 8월</p>
<p>Reference</p>	<p>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67L0548:EN:HTML</p>
<p>작성일자</p>	<p>2007년 12월 23일</p>